

제344회 정례회
2015.12.16.(수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박한범 의원 등 7명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1월 23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1월 24일

3. 제정이유

-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관내 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이 필요한 바,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지원하여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돕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.

※ 충북 도내 입양아동 현황 : 26명('12), 24명('13), 26명('14)

4. 주요내용

- 가. 도지사는 입양가정 지원 및 입양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책무를 규정 (안 제3조)
- 나.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연도별 입양가정 지원계획 수립·시행 (안 제4조)
- 다. 입양축하금으로 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아동은 2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5조)
- 라. 입양축하금 지원대상 범위 규정 (안 제6조)
 -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

- 「입양특례법」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양친
- 마. 입양축하금은 개인생활 보호차원에서 신청주의 원칙에 따라 지원토록 규정 (안 제8조)
 - 바. 입양관련 기관, 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 규정 (안 제13조)
 - 사. 입양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시장·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16조)

5. 검토의견

- 동 조례안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라, 보호대상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키기 위한 여건 조성 및 보호대상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돕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으로,
 - 일반적으로 요보호아동 중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은 입양되거나 아동양육시설에 입소 조치되어지나,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 측면에서 보면 아동양육시설 입소보다는 입양이, 해외입양보다는 국내 입양이 좀 더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내용 측면에서는
 - 안 제4조에는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매년 입양가정지원계획을 수립·시행토록 규정하였고,
 - 안 제5조에는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축하금 지원을 규정하였음.
 -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, 장애아동은 200만원으로함. 이는 입양가정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입양축하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충북도 내 4개 시·군 실태와 도의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판단됨.

※ 충북도 내 4개 시·군 입양 장려금(축하금) 지원현황

- ▶ 제천, 충주 : 일반 100만, 장애 200만

▶ 증평, 진천 : 일반 200만, 장애 300만

- 입양 축하금 지원의 경우, 「사회보장기본법」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에 관한 사항인 바, 지난 8월 10일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의뢰해 놓은 상태임.

- 안 제10조에서는 건전한 입양문화 정착과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함.
- 동 조례안은 현재 연 20여명에 불과한 충북도 내 입양가정을 확대하고 입양아동이 건강하게 양육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당부서와의 협의 및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마친 바, 타당하다고 사료됨